

제281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009년 6월 19일(금)

심 사 보 고 서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6. 19.

행정소방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9년 6월 4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6. 16.)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소방본부장 이동성)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용중인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적합하도록 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별표18,IV,5,아,4]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공사장에서 직접 자동차(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주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도 조례에서 정한 지정수량 미만도 직접 주유하는 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

-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의 반복승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과 배치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 상위법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제7호의 규정과 도 조례 제14조의 규정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이 개정 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신설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공사장에서 덤프 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에 직접 주유를 허용하는 조문을 신설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기간을 90일 이내로 하고 있음에도, 조례에는 1회 즉 90일을 반복 승인하도록 함으로 상위법과 불부합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시행령」과 조례에 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를 똑 같이 명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 요지 : “생략”

VI. 심사 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IV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5항의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조제2항의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9조(이동탱크저장소 저장 또는 취급 기준)</p> <p>① (생략)</p> <p>②소량위험물을 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이동탱크로부터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지 아니할 것.</p> <p>3. ~ 7. (생략)</p>	<p>제9조(이동탱크저장소 저장 또는 취급 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생략)</p> <p>2. 이동탱크로부터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지 아니할 것. <u>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IV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3. ~ 7.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p> <p>① (생략)</p> <p>② (생략)</p>	<p>제11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③임시저장 또는 취급 승인기간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곳으로서 하역장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기간 종료일 이전에 설치자가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반복승인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 신청의 수수료는 규칙 별표25 제1호에 의한다.

⑤제3항에 의한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보세구역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영 제4조 별표2 제7호라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영 제4조 별표2제7호가목 내지 다목의 위험물을 말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 (생략)

②이 조례 시행당시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를 설치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10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상치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삭제)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에 의한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 (생략)

②이 조례 시행당시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를 설치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9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상치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1.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제3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유 별	성 질	위 험 물		지 정 수 량
		품	명	
제1류	산화성 고 체	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5. 브롬산염류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300킬로그램
		7. 요오드산염류		300킬로그램
		8. 과망간산염류		1,000킬로그램
		9. 중크롬산염류		1,0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50킬로그램 ,300킬로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그램 또는 1,000킬로
제2류	가연성 고 체	1. 황화린		100킬로그램
		2. 적 린		100킬로그램
		3. 유 황		100킬로그램
		4. 철 분		500킬로그램
		5. 금속분		500킬로그램
		6. 마그네슘		500킬로그램
		7.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100킬로그램 또는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00킬로그램
		9. 인화성고체		1,000킬로그램
제3류	자 연 발화성 물 질 및 금수성 물 질	1. 칼륨		10킬로그램
		2. 나트륨		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		10킬로그램
		4. 알킬리튬		10킬로그램
		5. 황린		20킬로그램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킬로그램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킬로그램
		8. 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
		9. 금속의 인화물		300킬로그램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10킬로그램, 20킬로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그램, 50킬로그램 또 는 300킬로그램

제4류	인화성 액체	1. 특수인화물	50리터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수용성액체	400리터
		3. 알코올류	400리터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수용성액체	2,000리터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수용성액체	4,000리터			
6. 제4석유류	6,000리터			
7. 동식물유류	10,000리터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킬로그램	
		2. 질산에스테르류	10킬로그램	
		3. 니트로화합물	200킬로그램	
		4. 니트로소화합물	200킬로그램	
		5. 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6. 디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7. 히드라진 유도체	200킬로그램	
		8. 히드록실아민	100킬로그램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또는 200킬로그램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또는 200킬로그램	
제6류	산화성 액체	1. 과염소산	300킬로그램	
		2. 과산화수소	300킬로그램	
		3. 질산	300킬로그램	
		4.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300킬로그램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	

[별표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저장소의 구분
1.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장소. 다만, 제3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옥내저장소
2. 옥외에 있는 탱크(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간이탱크저장소
6. 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이동탱크저장소
7. 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다만 제2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가. 제2류 위험물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다. 제6류 위험물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중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옥외저장소
8.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

IV. 결합금속구 등

1. 액체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호스(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른 탱크로 위험물을 공급하는 호스를 말한다.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금속구를 사용하되, 그 결합금속구(제6류 위험물의 탱크의 것을 제외한다)는 낫쇠 그 밖에 마찰 등에 의하여 불꽃이 생기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입호스의 재질과 규격 및 결합금속구의 규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설비(주입호스의 선단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가. 위험물이 새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 나. 주입설비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그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 다. 분당 토출량은 200ℓ 이하로 할 것

제49조(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IV. 취급의 기준

5.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아. 이동탱크저장소(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 1)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주입할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입구에 이동저장탱크의 주입호스를 견고하게 결합할 것. 다만, 주입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양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지 아니할 것. 다만, 주입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별표 19 I의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인화점 40℃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옮겨 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 4)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주입하지 말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별표 10 IV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규격 및 성능등을 말한다.
5. "폐차"라 함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 할 수 없도록 압축·과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과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라 함은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정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자동차폐차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등 <개정 1999.1.29>)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계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말한다.
3. "건설기계대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대여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계정비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경미한 정비행위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매매업"이라 함은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폐기업"이라 함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하는 것(이하 "폐기"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중고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8. "건설기계형식"이라 함은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신설 1999.1.29>

[별표 1] <개정 2008.2.29>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삭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벙칭 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향타 및 향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사리채취기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펌프식·바켓식·덧퍼식 또는 그레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26. 특수건설기계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13. 삭제 <2007.5.17>